공 개

의안번호	제 208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6. 24. (제 12 차)

의결사항

농협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6. 24.

1. 의결주문

농협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농협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농협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서 정한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농협은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 붙임1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0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0호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2>

라. 관계부서 협의

□ 금융감독원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2020.5.22.) 심의필

□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2020.6.17.) 심의필

<별지>

농협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가.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10억원 부과

○ 조치사유 :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 법적근거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8조 제9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제390조, [별표22]

2. 조치사유

가.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에 대해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농협은행㈜의 ●●●지점 등 ××개 영업점 소속 직원 ××명은 ××××.×.×. ~ ××××.×.××. 기간 중 ××회(××,×××건)에 걸쳐 특정금전신탁 상품 관련 광고 문자메세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ELT* 특정금전신탁 투자상품 등을 홍보하였음

* 주가연계신탁(Equity Linked Trust) : 코스피200 등 특정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하여 수익률이 결정되는 주가연계증권(ELS)을 특정금전신탁 계좌에 편입한 신탁상품

< 붙임1 >

관 계 법 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③ 법 제108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그 밖에 수익자의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과태료금액 5,000만원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109조제3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

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나. 감경 사유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붙임 2 >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농협은행㈜

2. 제재조치일 : 2020. 6. 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 10억원 부과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에 대해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농협은행의 ●●●지점 등 ××개 영업점 소속 직원 ××명은 ××××.×.×. ~ ××××.×.××. 기간 중 ××회(××,×××건)에 걸쳐 특정금전신탁 상품 관련 광고 문자메세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ELT 특정금전신탁 투자상품 등을 홍보하였음

< 관련규정 >
1.「자본시장법」 제108조
2.「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3.「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나. 자율처리필요사항

(1) 특정금전신탁 판매시 적정성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농협은행 ■■■■■■지점 등 ××개 영업점은 ××××.×.××. ~ ××××.×.×. 기간 중 'ELS특정금전신탁 ◎◎-□□□호' 등 ××건(×억 ××백만원)을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인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투자자 성향이 적극투자형 또는 위험중립형으로 판단되어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초고위험)에는 적정하지 않음에도 동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확인을 받지 않았음

< 관련규정 >
1.「자본시장법」 제46조의2
2.「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및 제52조의2

(2)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시 자필기재 누락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농협은행 ◉◉◉지점 등 ×개 영업점은 ××××.×.××. ~ ××××.×.××. 기간 중 'ELS특정금전신탁 △△-▽▽▽호' 등 ×건(×억 ××백만원)을 판매하면서 계약서(신탁계약 세부내역)에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 투자자가 지정하는 운용방법을 투자자 본인이 자필로 적도록 하지 않거나 담당자가 대리 작성 후 서명만 하게 하였음

< 관련규정 >

1.「자본시장법」 제103조

2.「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특수은행검사국
연 락 처	02-2100-2663	02-3145-7205